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

2015년 3월 2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

1. 안건명

-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3일(월), 이봉수의원 외 17 인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2월 23일(월)

4. 검토의견

- 동 결의안의 합정동 군부대(천마중대) 이전은 오래 전부터 군부대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숙원 사항으로 매년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오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군부대 이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에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합정동 군부대는 서울 서부지역 대공방어의 요충지로 향후 방공 작전 환경에 변화가 있기 전까지 현 위치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또한 현재 합정동 인근지역에 군부대를 이전할 다른 대체 부지를 제공한다면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도 있으나, 그간 군부대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한강변에 이를 대체할 토지도 없거니와 한강변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는 국가 및 서울시의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어야 군부대 이전이 가능할 것임.

○ 협조사항으로

첫째, 국가에서는 합정동 군부대가 당초 수도방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군부대를 설치할 때에는 한강변에 큰 건물이 없어 적이 한강으로 수도 서울을 침투할 때 대공포 등 화력으로 수도 서울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동안 마포는 한강입구의 편리한 교통체계의 인프라를 갖추어 아파트 및 빌딩 등이 많이 들어선 상업 및 주택지역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합정동 인근지역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이 위치해 있음은 물론 2017년도에는 서울화력 발전소 지상 부지에 문화창작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합정동 인근 지역은 한강변 개발 등으로 많은 고층 건물 등이 들어섬으로 향후 합정동 군부대는 사실상 수도방위를 할 수 있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밖에 없고 현재도 그 기능을 상실하여 토지만 점유한 채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등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합정동 군부대를 인근 타 부대에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합정동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임.

○ 둘째, 또한 합정동 군부대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지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그 동안 이 지역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재산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오고 있었던 바, 한강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한강변 인근 타지역에 합정동 군부대를 이전 시킬 수 있는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책임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합정동 군부대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 더 이상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은 우리 구에서만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는 국가 및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결의하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가 및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보내어 합정동 군부대를 이전을 요구하는 우리 구의 주장은 마땅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14.8.10.] [법률 제12557호, 2014.5.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 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